

## ‘2018년 하반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정규직(행정직 및 기능직) 공개채용 공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해양전문 연구기관으로 21세기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채용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이 포함된 ‘직무설명자료’를 게시하며,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방법과 절차에서 지원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합니다.

### I 채용분야 및 인원

| 직종       | 채용분야        | 응시 코드 | 인원 | 지원가능전공 (세부전공) | 학력    | 주요 직무             |
|----------|-------------|-------|----|---------------|-------|-------------------|
| 행정직      | 경영기획 및 행정지원 | A1    | 6명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경영기획 및 행정 전반 업무 |
| 기능직 (선원) | 기관부원        | B1    | 1명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기관관련 업무         |
|          | 조리부원        | B2    | 1명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조리관련 업무         |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직무는 ‘채용사이트-공지사항-(제18-01-01호 공개채용)’ 직무설명자료 참고

### II 지원자격

#### 가. 공통 지원자격: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 1)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구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의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1. 참고)

##### 2) 병역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임용예정일(‘18.12.28. 예정)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 3) 임용예정일(‘18.12.28. 예정) 기준으로 연구원 직원 정년 기준인 만 61세 이하인자
- 4) 임용예정일(‘18.12.28. 예정)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나. 채용분야별 필수 지원자격

| 직 종      | 채용분야 | 주요내용                                                                                             |
|----------|------|--------------------------------------------------------------------------------------------------|
| 기능직 (선원) | 공통   | <input type="checkbox"/> ‘선원특수검진(외항선)’ 결과 승선 가능한 자<br><input type="checkbox"/> ‘미국비자①’ 발급이 가능한 자 |
|          | 기관부원 | <input type="checkbox"/> ‘선원수첩’ 소지자                                                              |
|          | 조리부원 | <input type="checkbox"/> ‘선박조리사 자격증’ 소지자<br>* 「선원법」 상 ‘선박조리사’로 승선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기능직(선원) 필수 지원자격은 ‘붙임 2.’ 참고

### III 채용 시 우대제도(가점)

#### 가. 채용가점

| 가산 유형     | 유형 정의                                                                                | 전형별 가산점  |          |          |
|-----------|--------------------------------------------------------------------------------------|----------|----------|----------|
|           |                                                                                      | 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 법령가점      |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②                                                    | 5점 ~ 10점 | 5점 ~ 10점 | 5점 ~ 10점 |
| 특별가점      | <input type="checkbox"/> 등록 장애인                                                      | 5점       | 5점       | 5점       |
|           | <input type="checkbox"/> 의사상자                                                        |          |          |          |
| 이전지역 지역인재 | <input type="checkbox"/> 최종 졸업학교(학사이하 기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학교 졸업(예정)자                    | -        | 3점       |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input type="checkbox"/> 최종 졸업학교(학사이하 기준)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해외’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 졸업(예정)자 | -        | 2점       | -        |
| 청년가점      | <input type="checkbox"/>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        | 2점       | -        |
| 여성가점③     | <input type="checkbox"/> 여성                                                          | -        | 2점       | -        |

※ 채용가점과 관련한 사항은 ‘붙임 3.’ 참고

① ‘경유/선원, 승무원 비자(C1/D)’ : 미국 또는 미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에서 근무 시 필요

②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비율을 각 전형단계별 채용가점으로 적용

③ 여성가점의 경우 별도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나. 고급자격가점

| 구 분         | 고급자격 유형                 | 전형별 가산점 |       |       |
|-------------|-------------------------|---------|-------|-------|
|             |                         | 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AICPA 포함) | -       | 5점    | -     |
|             | 세무사, 노무사                | -       | 3점    | -     |
| 기능직<br>(선원) | 기술사                     | -       | 5점    | -     |

## 다. 기능직(선원) 자격가점: 용접, 전기, 공조냉동기계 자격

| 구 분         | 일반자격 유형       | 전형별 가산점 |       |       |
|-------------|---------------|---------|-------|-------|
|             |               | 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 기능직<br>(선원) |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3점    | -     |
|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       | 2점    | -     |
|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       | 1점    | -     |

## 라. 가점관련 안내사항

- 모든 우대제도(채용가점, 고급자격가점, 기능직(선원) 자격가점)는 관련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결정에 따라 부여
  - 모든 우대제도(채용가점, 고급자격가점, 기능직(선원) 자격가점)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적용하며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
  - 우대제도 적용 방법
    - 우대제도(채용가점, 고급자격가점, 기능직(선원) 자격가점)의 혜택을 통한 가점의 합은 최대 10점을 상한으로 인정
    - 우대제도(채용가점)의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가지만 인정
- ※ 법령가점(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의 경우 가점상한(10점) 이내에서 가점요소 1가지 추가하여 적용 가능
- 우대제도(고급자격가점, 기능직(선원) 자격가점)의 혜택은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가지를 우대제도(채용가점)에 추가하여 가점으로 인정

예시 1) “대전광역시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남성 등록장애인”의 전형별 적용 가점

- 가점요소: 특별가점(5점), 비수도권지역인재가점(2점)
- 1차 전형 가점: 5점(특별가점: 5점)
- 2차 전형 가점: 5점(특별가점: 5점)
- 3차 전형 가점: 5점(특별가점: 5점)

예시 2) “부산광역시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 취업지원대상자(5%)”의 전형별 적용 가점

- 가점요소: 법령가점(5점), 이천지역인재가점(3점), 여성가점(2점)
- 1차 전형 가점: 5점(법령가점: 5점)
- 2차 전형 가점: 8점(법령가점: 5점 + 이천지역인재가점: 3점)
- 3차 전형 가점: 5점(법령가점: 5점)

예시 3) “부산광역시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취업지원대상자(5%)”의 전형별 적용 가점

- 가점요소: 법령가점(5점), 이천지역인재가점(3점), 여성(2점), 노무사(3점)
- 1차 전형 가점: 5점(법령가점: 5점)
- 2차 전형 가점: 10점(법령가점: 5점 + 이천지역인재가점: 3점 + 노무사: 3점)
- \* 우대제도 가점 상한 10점
- 3차 전형 가점: 5점(법령가점: 5점)

- 가점 부여 기준자격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 구비 필요

## IV 전형절차 및 일정

## 가. 전형절차

| 구 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
| 행정직         | <input type="checkbox"/> 서류심사<br>- 자격검증<br>* 지원자격, 지원서 필수 사항 작성 여부 등 | <input type="checkbox"/> NCS 기초능력시험: 40%<br><input type="checkbox"/> 직무능력시험: 60%<br>- 직무논술<br><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2회 실시(온라인)<br>- 면접 참고 자료       | <input type="checkbox"/> 상황면접: 40%<br><input type="checkbox"/> 경험행동면접: 60% |
|             | ⇒ 선발: 적격자 전원                                                         | ⇒ 선발: 채용분야별 4배수                                                                                                                                            | ⇒ 선발: 채용분야별 1배수                                                            |
| 기능직<br>(선원) | <input type="checkbox"/> 서류심사<br>- 자격검증<br>* 지원자격, 지원서 필수 사항 작성 여부 등 | <input type="checkbox"/> NCS 기초능력시험: 20%<br><input type="checkbox"/> 직무능력시험: 80%<br>- 전문직무시험(필기)<br><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2회 실시(온라인)<br>- 면접 참고 자료 | <input type="checkbox"/> 상황면접: 40%<br><input type="checkbox"/> 경험행동면접: 60% |
|             | ⇒ 선발: 적격자 전원                                                         | ⇒ 선발: 채용분야별 4배수                                                                                                                                            | ⇒ 선발: 채용분야별 1배수                                                            |

※ 주요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 구 분        | 행정직                                                                                               | 기능직(선원)                         |
|------------|---------------------------------------------------------------------------------------------------|---------------------------------|
| NCS 기초능력시험 | <input type="checkbox"/>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br><input type="checkbox"/> 정보능력 |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능력 |
| 인성검사       | <input type="checkbox"/> 성격, 직무성향 등 인성 전반                                                         |                                 |
| 상황면접       | <input type="checkbox"/> 전공지식, 업무경력/경험 등을 활용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                                 |
| 경험행동면접     | <input type="checkbox"/> 인성, 조직적합도 등 평가                                                           |                                 |

※※ 인성검사(온라인)에 응시한 지원자에 한하여 3차 전형 실시(\* 인성검사(온라인) 미응시는 불합격 처리)

## 나. 일정

- 채용공고 기간: ‘18.10.12.(금) ~ 10.26.(금), 16:00
- 입사지원서 접수 일정: ‘18.10.17.(수), 09:00 ~ 10.26.(금), 16:00

- 채용홈페이지(<http://kiost.recruiter.c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우편·이메일·FAX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 필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 및 지원 불가)

-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위해 채용홈페이지에 장시간 접속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완료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 3) 전형일정

| 구 분            | 내 용          | 일 정                        |
|----------------|--------------|----------------------------|
| 1차 전형          | □ 서류심사       | ‘18. 10. 29.(월)~10. 30.(화) |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 ‘18. 11. 01.(목) 예정         |
| 인성검사 1(온라인)    |              | ‘18. 11. 05.(월)~11. 13.(화) |
| 2차 전형          | □ NCS 기초능력시험 | ‘18. 11. 12.(월)            |
|                | □ 직무능력시험     |                            |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 ‘18. 11. 21.(수) 예정         |
| 인성검사 2(온라인)    |              | ‘18. 11. 22.(목)~11. 25.(일) |
| 3차 전형          | □ 면접         | ‘18. 11. 29.(목)            |
| ‘3차 전형’ 합격자 발표 |              | ‘18. 12. 05.(수) 예정         |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  |              | ‘18. 12. 07.(금)~12. 17.(월) |
| 최종 합격자 발표      |              | ‘18. 12. 26.(수) 예정         |

※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 및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예정

## V 근무조건 및 근무지

## 가. 근무조건

| 구 분       | 내 용                                                                                                                                                                                              |
|-----------|--------------------------------------------------------------------------------------------------------------------------------------------------------------------------------------------------|
| 고용형태 및 계약 | □ 고용형태: 정규직<br>□ 고용계약: 최종합격자에 대한 초임계약은 1년으로 체결<br>- 초임계약 후 근무실적평가(NCS 기반 업무계획서 및 자기개발계획서 작성 후 평가 시행)에 따라 3년 단위 재임용 계약 체결<br>※ 3년 단위 고용계약은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정규직 직원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기간제의 고용계약과는 다른 개념임. |
| 임용 후 직급   | □ 행정직: 행정원<br>□ 기능직(선원): 기능원                                                                                                                                                                     |
| 연봉        | □ 경력사항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a href="http://www.alio.go.kr/">http://www.alio.go.kr/</a> ) 참조                                                                                       |

## 나. 근무지

| 구 분         | 내 용                                                                                             |
|-------------|-------------------------------------------------------------------------------------------------|
| 행정직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br>-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br>※ 입사 후 연구원 수행 업무 등에 따라 본원 근무 가능 |
| 기능직<br>(선원) | □ 남해연구소<br>- 주소: (5320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길 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

※ 본원 및 본원 위치는 홈페이지 참조

## VI 제출 서류 및 정보 추가 입력

## 가. 지원 시 제출 서류

| 구 분         | 서류 목록           | 내 용                                               | 제출 방법                        |
|-------------|-----------------|---------------------------------------------------|------------------------------|
| 공통          | 입사지원서           | □ 기본 사항                                           |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작성          |
|             | 자기소개서           | □ 지원 동기, 역량 등 개인사항 상세 기술                          |                              |
|             | 직무능력소개서         | □ 수행 예정 직무 관련 교육, 경력, 경험 등 상세 기술                  |                              |
| 기능직<br>(선원) | 필수 지원자격<br>증빙서류 | □ 기관부원<br>- 선원수첩(사본)<br>□ 조리부원<br>- 선박조리사 자격증(사본) | □ 증빙서류 스캔하여 채용사이트 접속 후 파일 첨부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필수 지원자격 증빙’ 만 인정

※※ 제출 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의 사본 스캔파일만 인정되며, 인터넷 조회 화면을 캡처한 파일,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파일은 컴퓨터 화면에서 성명, 발급날짜 등 모든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해상도를 설정하여 스캔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빙서류 수집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삭제 후 스캔/첨부할 것

※※※ ‘필수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추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첨부파일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

## 나. 정보 추가 입력사항 안내

- 1) 목적: 2차, 3차 전형 시 본인 확인용
- 2) 대상: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 3) 추가 입력사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이미지파일)
- 4) 입력방법: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입력방법 안내 예정
- 5) 입력기간: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점 ~ ‘18. 11. 05.(월)

## VII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안내

가. 최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사진, 출신학교’의 7개 항목의 기재란은 없으며,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 금지

나. e-m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기업 등)이 드러나는 e-mail 기재 금지

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기재를 금지한 정보 입력 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단, 입사지원시스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제외)에 입력하는 인적사항, 각종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의 경우 채용담당부서에서 지원자 본인 확인을 위해 취급하는 정보로 ‘블라인드 채용금지사항 위반’과 무관

라.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 지역인재 등의 정보 및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등록한 추가 정보(생년월일)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됨

## VIII 이의신청 및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가. 이의신청 안내

- 1) 이의신청 대상: 채용 전형 불합격에 대한 이의 사항
- 2) 접수기간: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추후 접수기간 안내 예정)
- 3)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kiost.recruiter.co.kr>)-공지사항’에 접수 방법 확인
- 4)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후 개별적으로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나.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 1)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니며, 3차 전형(면접심사) 시 제출한 채용서류(원본) 일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 대상자: 2018년 하반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규직(행정직 및 기능직) 공개채용 3차 전형(면접심사) 응시자
  - 신청방법: ‘채용사이트(<http://kiost.recruiter.co.kr>)-공지사항’에 신청 방법 확인
  - 신청기간 및 반환: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2)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IX 기타사항

가. 채용분야 중복 지원 불가

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채용가점, 고급자격가점) 유효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다. 1차 전형(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2차 전형(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함(증빙서류는 지원자격·가점 적용대상 확인만을 위해 활용)

라.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작성 시 비속어 사용, 의미 없는 단어반복, 타인의 작성 내용과 동일한 경우, 불성실 작성(작성 분량 미준수) 등은 불합격 처리함

마.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일(‘18.10.25.(목), 16: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

바. 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수험표 출력은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출력 가능

사.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입력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아. 입사지원서 허위작성(자격, 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증빙서류 등) 위변조, 제출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해당 전형 절차를 정지, 무효 및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차.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카. 예비합격자는 추가 임용사유\* 발생 시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충원우선 순위(3차 전형 차순위자순)에 따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추가 임용사유

- 3차 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또는 제출서류 검증 부적격에 따른 결원 발생의 경우
- 최종합격자 미입사에 따른 결원 발생의 경우
- 부정채용 등에 의해 결원 발생으로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의 경우

※ 예비합격자 명단은 3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이며 예비합격자의 효력은 ‘19.02.28. 까지 이고, 차기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타. 외국국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해당국가 신원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 및 입사에정일(‘18.12.28. 예정) 기준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증빙할 사증(visa) 제출 필요

파.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시 연구원 채용홈페이지(<https://kiost.recruiter.co.kr/>)를 통해 공지함

**X** 문의처

가. 홈페이지 문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채용홈페이지(<https://kiost.recruiter.co.kr/>) '채용 Q&A'  
나. e-mail 문의: recruiter@kiost.ac.kr  
다. 전화 문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사실 (051) 664-9035

2018년 10월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붙임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 붙임 2

## 기능직(선원) 필수 지원자격

## □ 기능직(선원) 필수 지원자격

## ○ 공통

| 구 분             | 내 용                                                                                |
|-----------------|------------------------------------------------------------------------------------|
| 선원특수검진<br>(외항선)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선원건강검진 결과 승선이 가능한자<br>- 입사 후 유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 취소    |
| 미국비자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경유/선원, 승무원 비자(C1/D)’ 이 가능한 자<br>- 입사 후 비자발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용 취소 |

## ○ 기관부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선원수첩’ 소지자

| 「선원법」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  |
|-----------------------------------------------------------------------------------------------------------------------------------------------------------------------------------------------------------------------------------------------------------------------------------------------------------------------------|--|
| <p>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li> <li>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li> </ol> <p>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에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p> |  |

## ○ 조리부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선박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선원법」 제76조(선내 급식)                                                                                                                                                                                                                                                                                                                                                                                       |  |
|---------------------------------------------------------------------------------------------------------------------------------------------------------------------------------------------------------------------------------------------------------------------------------------------------------------------------------------------------------------------------------------------------------|--|
| <p>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과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p> |  |

## ※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과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 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2.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붙임 3

## 채용가점 근거 및 이전지역 인재 참고 자료

## □ 채용가점 근거

## ○ 법령가점

| 구 분  | 가 점            | 근 거                                          |
|------|----------------|----------------------------------------------|
| 법령가점 | 5점<br>~<br>10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가점 등)   |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      |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

## ○ 특별가점

| 구 분    | 가 점 | 근 거                                               |
|--------|-----|---------------------------------------------------|
| 등록 장애인 | 5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
| 의사상자   | 5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 ○ 지역인재가점

| 구 분          | 가 점 | 근 거                                                                                                            |
|--------------|-----|----------------------------------------------------------------------------------------------------------------|
| 이전지역<br>지역인재 | 3점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을 근거로 최종 졸업학교(학사이하 기준)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학교 졸업(예정)자              |
| 비수도권<br>지역인재 | 2점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을 근거로 최종 졸업학교(학사이하 기준)의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 졸업(예정)자 |

## ○ 기타가점

| 구 분  | 가 점 | 근 거                                                               |
|------|-----|-------------------------------------------------------------------|
| 청년가점 | 2점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 따라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 여성가점 | 2점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별도 증빙 필요 없음.       |

## □ 이전지역 인재 참고 자료

### ○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 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우리 연구원 지원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함**
-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음**

### ○ 이전지역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경북)
-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④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 이전 지역인재

-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